

제19장 협력

제19.1조 적용범위

1. 당사국들은, 그들의 상이한 발전 수준과 경제규모를 고려하여, 이 장의 목적의 이행에 기여하는 수단으로서, 특히 경제적, 기술적 및 상업적 협력에 주의하여, 모든 형태의 협력의 중요성을 확인한다.
2. 이 장에 따른 당사국들 간 협력은 이 협정의 그 밖의 장과 그 밖의 양자적 협력 메커니즘에 규정된 당사국들 간 협력 및 협력활동을 보완할 것이다.
3. 당사국들은 이 장에서 발굴된 분야의 협력에 대하여 우선순위를 부여하도록 노력한다. 그러나, 이는 다른 부분 또는 영역의 포함에 대하여 제한을 구성하지는 아니한다.

제19.2조 목적

이 장의 목적은 특히 다음을 목표로 하는 긴밀한 협력의 수립을 촉진하는 것이다.

- 가. 이 협정의 기회와 혜택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당사국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
- 나. 양자적, 지역적 또는 다자적 수준에서 협력을 개발하는 것
- 다. 경제적 및 사회적 발전을 증진하는 것
- 라. 생산적 상승효과를 제고하는 것, 무역 및 투자의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는 것, 그리고 경쟁력 및 혁신을 증진하는 것
- 마. 소상공인·중소기업이 국제 무역 또는 글로벌 가치사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중소기업의 발전을 지원하고 촉진하는 것
- 바. 당사국들 간 협력 관계를 고려하여 협력활동의 수준을 제고하는 것
- 사. 국제 시장에서 당사국들과 그 상품 및 서비스의 비중 확대를 장려하는 것, 그리고
- 아. 자국의 정책과 개발전략에 규정된 우선순위를 이행하도록 당사국들의 노력을 지원하고 보완하는 것

제19.3조 방법 및 수단

1. 당사국들 간 협력은 적절한 기관을 통하여 규칙과 절차에 따라, 당사국들이 이용 가능한 도구, 자원 및 메커니즘을 통하여 이행될 것이다.

2. 특히, 사업의 선별, 개발 및 이행을 위하여 당사국들은 정보, 경험 및 우수 관행의 교환, 기술 지원, 그리고 특히 3자 간 협력을 포함하는 상환 및 비상환 재정적 협력과 같은 수단 및 세 부원칙을 이용할 수 있다.

제19.4조 협력위원회

1. 당사국들은 각 당사국의 대표로 구성된 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2. 이 장의 목적상,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을 포함한다.
 - 가. 당사국들 간 협력 분야를 합의하고 발전시키는 것
 - 나. 협력 발전을 위한 작업계획을 수립하는 것
 - 다. 이 협정 내에 구성된 각 위원회가 개발한 협력 작업 계획을 수집하고 통합하는 것
 - 라. 협력을 위한 제안을 검토하고 평가하는 것
 - 마. 협력 프로그램, 협력 사업 및 그 밖의 협력 계획을 점검하는 것
 - 바. 협력 프로그램, 협력 사업 및 그 밖의 협력 계획의 목적을 이행하고 달성할 것을 보장하는 것
 - 사. 당사국들의 전략적 우선순위에 따라 협력 프로그램, 협력 사업 및 그 밖의 협력 계획 제시를 위한 지원과 조언을 제공하는 것, 그리고
 - 아. 공동위원회가 위임하거나 당사국들이 합의할 수 있는 그 밖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
3. 당사국들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위원회는 매년 최소 1회 회합한다. 회의는 직접 대면 또는 이용 가능한 기술적 수단을 통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9.5조 접촉선

1. 당사국들은 가능한 협력 활동에 관한 의사소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접촉선을 지정한다. 접촉선은 이 장의 운용을 위하여 그들의 정부기관, 비즈니스 분야 대표, 그리고 교육 및 연구기관과 함께 작업할 의무를 가질 것이다.
2. 이 장의 이행을 위하여, 다음의 접촉선이 지정된다.
 - 가. 한국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 나. 코스타리카의 경우, 대외무역부(Ministerio de Comercio Exterior)
 - 다. 엘살바도르의 경우, 경제부(Ministerio de Economía)

- 라. 온두라스의 경우, 경제개발부(Secretaría de Desarrollo Económico)
- 마. 니카라과의 경우, 산업통상개발부(Ministerio de Fomento, Industria y Comercio), 그리고
- 바. 파나마의 경우, 산업통상부(Ministerio de Comercio e Industrias)

또는 그들의 승계기관 또는 당사국들이 통보하는 부서

제19.6조 협력분야

1. 당사국들은 다음의 분야들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하는 상호 유익한 조건을 통한 협력의 수단 및 메커니즘을 사용하는 것을 촉진할 것이다.

- 가. 소상공인·중소기업
- 나. 문화(관광 및 시청각 서비스 포함)
- 다. 더 우호적인 기업환경 증진
- 라. 보건의료 산업
- 마. 농업, 축산(농공업 포함)
- 바. 산업 및 상업(섬유 및 의류)
- 사. 과학 및 기술(정보기술 및 통신 포함)
- 아. 운송, 물류 및 유통
- 자. 무역 및 지속 가능한 개발(산림 및 재생에너지 포함)
- 차. 어업 및 양식
- 카. 금융서비스 분야,¹ 그리고
- 타. 당사국들이 합의한 그 밖의 분야

2. 당사국들은 이 협정의 다른 장에 규정된 협력 활동 또는 협력 분야뿐만 아니라 제1항에 기술된 분야의 협력을 개발하고, 촉진하며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제19.7조 분쟁 해결

¹ 이 호는 온두라스에만 적용된다.

어떠한 당사국도 이 장에서 발생하는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도 제22장(분쟁해결)을 이용하지 아니한다.

부속서 19-가
소상공인·중소기업 협력

당사국들은 특히 다음을 목적으로 소상공인·중소기업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 가.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생산적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과 시책을 개발함에 있어 협력하고 정보와 경험을 공유하는 것
- 나. 관리 기술 개발, 기술이전, 제품 품질 개선, 글로벌 가치 사슬 연계, 공급자 개발, 정보기술, 금융 및 기술지원으로의 접근과 같은 분야에서 당사국들의 소상공인·중소기업이 협력 및/또는 모범관행의 공유를 촉진할 네트워킹 기회를 설립하는 것, 그리고
- 다. 당사국들의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상호 발전과 투자 유입을 촉진하는 것

부속서 19-나 시청각 공동제작 및 서비스

제1조 시청각 공동제작

1. 영화, 애니메이션 및 방송프로그램을 포함한 영역에서의 시청각 공동제작이 당사국들 간 시청각 산업의 발전과 문화적 및 경제적 교류, 그리고 이해 증대에 상당히 기여할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 당사국들은 시청각 공동제작협정의 협상을 고려하는 데 합의한다.
2. 제1항에 따른 공동제작협정은 발효² 후,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가 되며, 오로지 이 협정의 조건에 따라 해석되고 적용된다.
3. 시청각 공동제작협정은 당사국들의 권한 있는 당국³ 간에 교섭될 것이다.

제2조 시청각 서비스

1. 당사국들은 서로 다른 수단을 통하여, 특히 교육, 정보 교환, 전문성 및 경험 교류, 그리고 기술과 노하우의 활용과 이전 분야에서 지원을 촉진하는 것을 포함하여 협력하기로 합의한다.
2. 당사국들은 시청각 분야의 발전을 장려할 목적으로, 기술지원과 시청각 분야와 관련된 상품과 서비스의 제작과 교류를 촉진할 기회 분야를 발굴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3. 시청각 서비스 분야의 협력은 당사국들의 권한 있는 당국과 협의된다.

² 공동제작협정의 발효는 각 당사국의 내부 절차에 따라 결정된다.

³ 권한 있는 당국은 다음을 말한다.

가. 한국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및 방송통신위원회

나. 파나마의 경우, 산업통상부(Ministerio de Comercio e Industrias), 영화시청각산업총국(Dirección General de la Industria Cinematográfica y Audiovisual) 그리고

다.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및 니카라과의 경우, 제 21.3 조(접촉선)에 따라 접촉선이 통보한 당국 또는 그들의 승계기관

부속서 19-다 기업환경 개선

1. 당사국들은 당사국들의 공공 및 민간 분야의 무역과 투자 활동을 증진할 목적으로 더 호의적인 기업 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한다.
2.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당사국들은 협력위원회 회의를 계기로 기업 환경 개선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협의할 수 있다.
3. 이 부속서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협력위원회는
 - 가. 당사국들의 기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과 수단을 논의할 수 있다. 그리고
 - 나. 당사국들의 정부기관 이외의 관련 기관의 대표를 초청할 수 있다.

부속서 19-라 보건산업협력

1. 당사국들은 공중보건 증진 및 보호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 의약품, 의료기기 및 화장품 포함 보건산업 분야에서 상호 성장 및 발전을 위하여 협력하도록 노력한다.
2. 보건산업 분야에서의 협력 분야는 다음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 가. 다음에 관한 정보교환
 - 1) 의약품 및 의료 기기 등록, 수입, 유통 및 마케팅에 관한 법, 규정 및 결의안, 그리고
 - 2) 참여를 장려하기 위한 학회, 세미나, 워크숍, 전시회, 박람회 및 그 밖의 행사
 - 나. 다음 사항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하는 사안에 관한 정보 및 경험 교류, 세미나, 회의, 워크숍 및 강좌와 같은 메커니즘을 통한 역량 강화
 - 1) 의약품 및 의료기기에 대한 등록 절차, 그리고
 - 2) 제약 산업의 다른 생산 지역에 관한 약학 학위가 있는 보건의료 전문가 및 학생 대상 인턴쉽
 - 다. 다음에 관한 관련 민간부문에서의 협력
 - 1) 연구원, 학생 및 관련 산업 관계자의 교류
 - 2) 공동 연구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
 - 3) 제품 품질 개선, 공급망 연계, 기술교역 등, 그리고
 - 4) 상호투자 기회의 증진 및 촉진